

# 시설관리 규정

□ 제정 : 2017. 05. 01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건축물 및 시설물의 관리, 유지, 안전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. 또한 안전점검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건물의 내구연수를 연장하고, 에너지를 절감하며 교육, 연구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의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로 자연 및 생활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① 시설관리, 유지, 보수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② 이 규정은 본교 시설물의 사용에 수반된 모든 분야에 적용한다.

**제3조(운영부서)** 본교 시설에 대한 건축물, 냉난방설비, 전기, 통신, 청소, 에너지, 환경오염 등 제반업무는 환경관리과에서 운영 한다.

## 제2장 조직 및 업무

**제4조(조직)** 환경관리과에서는 설비, 전기, 일반관리로 구분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을 관리하며 총괄 지휘감독은 환경관리과장으로 한다.

**제5조(업무분장)** 설비, 전기, 일반관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### 1. 설비

- ① 급수, 위생기기 및 상하수도 시설 정비 유지 관리
- ② 냉난방 시설 및 가스 사용시설 정비 유지 관리
- ③ 건축물 소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정비 유지 관리

### 2. 전기

- ① 수변전 설비 및 비상발전 시설 정비 유지 관리
- ② 전화 및 통신시설 정비 유지 관리
- ③ 승강기 유지 관리

### 3. 일반관리

- ① 건물 및 토목시설의 정비 유지 관리
- ② 교내 청소 및 정비 유지 관리

## 제3장 유지관리

**제6조(건물)** ① 환경관리과 인원으로 건물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일상점검을 시행 한다.

② 건물별 관리책임자(정·부)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시행 한다

③ 하절기: 2개월/1회, 동절기: 3개월/1회 소독 한다

④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중 건물별 순차적으로 대청소를 시행 한다.

⑤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중 노후화 건물 실내 도색 한다.

**제7조(상하수도)** ① 저수조 및 고가수조는 년2회 청소를 시행하며 년1회 수질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화성시청에 제출 한다

② 상하수도 요금은 매월 30일 까지 납부 한다.

**제8조(가스)** ①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,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
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검사(한국가스안전공사)를 년1회 시행 한다.

③ 도시가스 사용시설은 공급업체에서 시행하는 년2회 안전검사를 시행 한다.

④ 도시가스 정압기와 필터는 4년 마다 분해점검을 시행하고 그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.

⑤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에 따라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⑥ 도시가스 요금은 매월 25일 까지 납부 한다.

**제9조(냉난방)** ①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
②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는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③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부터 매년1회 계속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.

④ 냉난방 온도제한 기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2에 따라 냉방: 26℃ 이상, 난방: 20℃ 이하로 한다.

**제10조(전기)** 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, 전기안전관리원 2명을 선임하여야 한다.

②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부터 매년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.

③ 전기 요금은 매월 18일 까지 납부 한다.

## 제4장 환경오염물질 관리

**제11조(방지시설)** 본교 배출시설(기계실, 실험실)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기 위하여 그 시설에 적절한 방지시설을 설치한다.

**제12조(환경기술인)** 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 2명(폐수1, 대기1) 을 임명하여야 한다.

② 환경기술인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환경기술인 관리내용 및 준수사항)**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환경관리인의 관리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### 1. 관리내용

가.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

나.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보존에 관한 사항

- 다. 자가 측정 및 운영일지 기록·보존에 관한 사항
- 라. 그 밖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관할관청에서 지시하는 사항

2. 준수사항

- 가.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으로 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나.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다. 자가측정은 정확히 하여야 하며, 자가측정 기록부에 이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실험폐수 처리)** 실험(실습)실에서 실험폐수는 실험폐액과 세척폐수로 구분하여 처리한다.

**제15조(실험폐기물)** ① 실험(실습)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 규정에 따른다.

- ② 실험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올라시스템을 통하여 보고 한다.

## 제5장 에너지 관리

**제16조(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)** 본교는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업체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의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1.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
- 2. 당해년도 에너지 사용 예정량
- 3. 에너지 사용기자재의 현황

(주) 기준량 : 연료 및 열과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,000 T.O.E 이상

**제17조(에너지진단)** 본교는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업체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 부터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.

## 제6장 공사 관리

**제18조(안전관리자 지정)** 당해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
**제19조(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)** ① 안전관리자는 공사장 시공자의 안전용품 착용과 위험물질 방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점검 감독하여야 한다.

- ② 당해공사의 계약서, 도면, 시방서, 현장설명사항, 공법 및 관련 기술 등 공사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제정 규정은 2017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.